

서울특별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안 설 명

교통위원회 윤기섭 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원구 제5선거구 윤기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께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직접 참석하여 설명드려야 하나 서면으로 제안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시 공영차고지를 이용하는 충전시설 사업자 등 입주업체들은 사용허가를 받아 사용료를 납부하며 공영차고지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입주업체는 공영차고지 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할 책임이 있으며, 서울시 또한 공영차고지 시설이 적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공영차고지 이용과 관련하여 입주업체들이 체결한 협약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거나 시설 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 공영차고지 운영의 질이 저하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공영차고지의 건전한 운영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입주업체의 책임과 의무를 보다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입주업체가 협약사항을 포함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규정을 보완하고,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이번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입주업체가 공영차고지 및 관련 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뿐만 아니라 협약사항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규정하고(안 제6조제1항),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장이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하는 것입니다(안 제8조제2호).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원안을 참고해 주시고, 모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